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요강(2회차)

- 본 사업 2회차 공고는 1회차 요강을 대부분 준용하되 변경되는 항목은 **파란색 글씨로 표기**하였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 집행가능 기간(~12.31.까지)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1.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
2. VFX, 버추얼 프로덕션, 특수관 포맷 변환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제작 공정에 공적 지원을 집중 투입하여, 국내 영화 기술의 내재화 및 전문 인력 유지 기반 마련



2.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지원총액	■ 79억 원 중 1회차 지원결정 총액의 잔여분
자격내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작사 ※ 신청사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신청 자격	구분
	투자사 확정
	메인투자사 요건
내용	
■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메인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서 확인 가능한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인 투자사의 투자가 확정되어야 함	

지원신청 편수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신청서류 제출 가능 * 제작사가 감독, 프로듀서, 촬영 감독 등 키 스태프를 달리하는 2편을 각각 신청 가능 * 1회차에서 선정되어 이미 2편을 수행 중인 제작사는 신청 불가하며 선정 편수가 2편 미만인 경우, 잔여 편수 내에서만 신청 가능	
	구분	내용
공동제작 영화 신청기준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 방식	■ 신청은 1개 대표 제작사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제작계약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완료, 정산의 모든 책임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함
국제공동제작 영화 신청기준	■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에 의한 한국영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지원작으로 최종 선정된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약정체결 전까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기준에 의거한 한국영화 인정을 득해야 함	
	구분	내용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 방식	■ 신청은 1개 대표 제작사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제작계약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완료, 정산의 모든 책임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함
	구분	내용
신청 분야 및 선정 편수	신청자격	제작사 신청
	선정편수	○편 이상
편당 지원금액	■ 선정 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이내 선정 가능	
	■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 첨단기술(VFX, 버추얼 프로덕션, 3D/4D/다면상영 포맷 변환 등)을 활용한 촬영 및 후반작업 비용 지원	

2. 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내용
지원금 사용 용도	■ 선정된 영화의 첨단기술 활용 촬영 및 후반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버추얼 프로덕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사용료, LED월 임차 등
	VFX/CG 제작비 VFX 아티스트 인건비, CG 제작비 등 시각효과 제작비 일체
	사운드 돌비, 폴리, ADR, 사운드 디자인, 믹싱, 음악 녹음 등
	특수관 포맷 변환 3D, 4D 전환, IMAX 등 특수관 포맷 변환 후반작업 비용
지원금 사용 용도	■ 제작사 대표의 인건비는 위원회 보조금 집행 불가
	■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약정체결 전 집행금액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계산서/카드 집행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및 원천징수액의 사업자 부담액은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인건비성 집행 - 보조금의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시급(1시간 기준): 2026년 10,3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지원사업 참여 주요인력(VFX 슈퍼바이저, 기술감독 등 첨단기술 직책)에 대한 참여율 기재 필수 * 동일 기간 내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중복 참여 100% 초과 확인 시 집행 불인정 -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집행 가능(단, 고용주 부담금 제외) - 인건비성 집행: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인적용역에 해당됨
	집행불가 항목 - 식대 및 부식비,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경상비(통신회,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 집행 불가

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필수 확인사항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작비 명세서 또는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제작비 명세서는 반드시 후반작업비 내역 및 소요예산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증빙(메인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 본 사업 1회차 신청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아니한 작품 신청 가능 ■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신청한 작품은 신청 불가 - 단, 접수일 현재 결정심사 대상작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작품일 경우 동일한 작품으로 본 사업 2회차 접수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우편, 택배, 방문, 쿼서 서비스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영화제작업 신고증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투자계약서 또는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제작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아래 해당하는 작품은 신청이 불가함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기준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제작지원 사업(국고 재원)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아래 해당하는 신청사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인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인 경우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선정 이후 제작사 및 작품에 참여하는 연출자의 변경은 불가함 ■ 보조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보조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류와 결과물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은 첨단기술 활용 보고서, 정산 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A프린트 편집본 등에 해당함 * 사업완료 기한(2026. 12. 31.)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 결과물은 위원회가 사업 수행 결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차기 위원회 사업 참여 시 반영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시 지원금(보조금) 대상 회계검증보고서 및 해당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1차 수익금 정산 시까지 순제작비가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봉기한: 2027. 6. 30.까지 극장 개봉하여야 함. 1회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위원회 사전 승인 필수, 최장 2027. 12. 31.) ■ 극장 개봉 후 1개월 이내 크레딧이 포함된 DCP 완성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조건	극장개봉 기준 - 인구 200만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에서 각각 '실질개봉'(개봉기간 중 40회차 이상 상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하는 2026년 실질개봉 기준에 의거 일부 내용 조정될 수 있음
투자배급계약 체결 의무	■ 선정작은 지원신청 시 메인투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작은 개봉 전 배급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배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표준계약서	■ 선정작은 근로표준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상영표준계약서 등 영화산업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 의무	사용하여야 함
지원금 상환	■ 상환 조건 없음 * 본 사업은 첨단기술 활성화 및 기술 내재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진흥 성격의 보조금으로서, 지원금 상환 의무는 부과하지 않음
원작 관련	■ 원작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재외동포	■ 재외동포도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접수 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1.(금) 16:00까지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 (양식1), (양식2)의 경우 위원회 제공양식의 각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위원회가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사)에 있음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약정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를 아래 기본서류 번호 순으로 정리 후 **3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 (양식1) ①~⑥ 결합파일, (양식2) ⑦ 파일, (양식3) ⑧~⑫ 결합파일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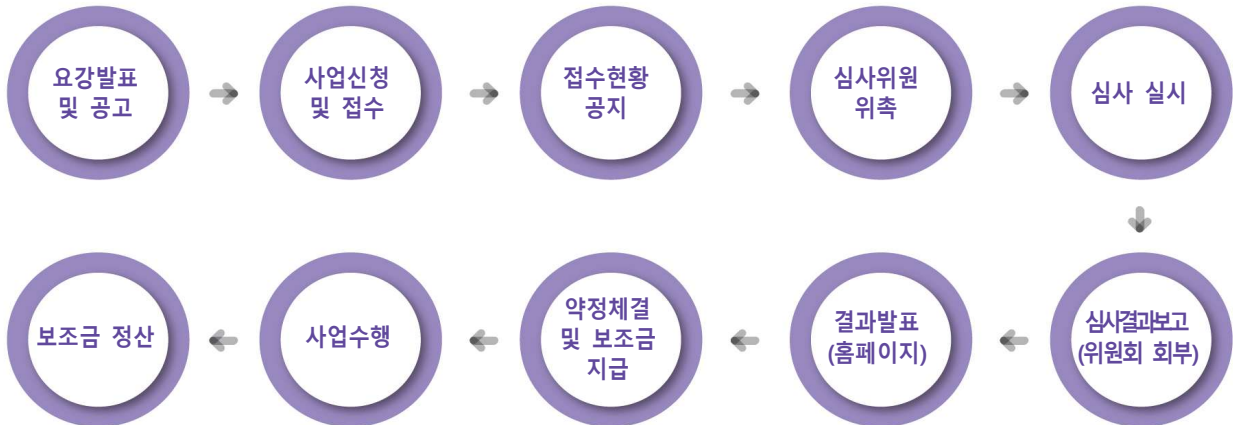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기본 서류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양식1) 위원회 제공양식
	⑦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⑧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의 30% 이상) ⑨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⑩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⑪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 ⑫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양식2) (양식3) 개별양식
	참고	기본서류는 (양식1), (양식2), (양식3) 각각 pdf 파일로 변환 후 3개의 파일로 제출



3. 지원 및 선정 절차



1. 지원절차 흐름도



2. 선정절차

(1) 심사 및 최종선정

-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작품을 선정함
- ☐ 선정된 작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함
- ☐ 결정심사 대상: 해당 작품의 사업신청자(감독 또는 제작자) 등 2인 이내

(2) 선정기준

- ☐ 심사는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결정심사(면접심사) 2단계 심사 진행 예정
 -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하여야 함
- ☐ 약정 체결 후 부속합의약정을 통해 순제작비를 확인하고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함
-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교부조건

- ☐ e나라도움 등록: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국고사업 수혜 이력 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

-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 본 보조금은 선정된 영화의 첨단기술 활용 촬영 및 후반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 (세부 용도 '2. 지원 내용 > 2) 지원금 사용 용도' 참조)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을 금액과 상관없이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회계검증을 진행하여야 함(회계 검증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4. 통지의무 및 승인

-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5. 수행명령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6.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첨단기술 활용 보고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세부집행내역서, (보조금)집행증빙자료, (보조금)회계검증보고서 등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7. 이월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함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지자체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업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하고, 정산시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에서 영수증 등을 검토한 별도 회계검증 서류 제출 필수)
 - 결과보고서(중간점검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각종 성범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9.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10.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1. 제작환경 개선

☐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 건강권 보장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아동 보호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2.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제작자, 감독, 배우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3. 성평등 정책

☐ 참여자 성비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별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 ☐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소정
양식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작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6. 문의처



- ☐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정책본부 AI영화기술TF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이예원	051-720-4855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